
도농상생발전을 위한
농촌지역 농공상 협력 강화 방안

김용렬_연구위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도농상생발전을 위한 농촌지역 농공상 협력 강화 방안¹⁾

- 농공상 융합형 중소기업 정책을 중심으로 -

The Small and Medium Enterprise Policy converged with agriculture, industry, and commerce

김용렬_연구위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목 차

- I. 서론
- II. 농공상 융합형 중소기업 관련 정책 분석
- III. 농공상 융합형 중소기업 협력 사례와 시사점
- IV. 일본의 농상공연대와 6차 산업화 제도 분석
- V. 농공상 협력 활성화 방안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pose legal grounds that induce the expansion of convergent businesses while supporting cooperations between farming and fishing industries and SMEs, along with preparing for organic partnership plans by analyzing the related policies of the central government in order to execute the promotion strategies for SMEs converged with agriculture, industry, and commerce.

A convergence-type SME refers to a company that generates high-added value by convergence of raw materials--farming and fishing products--into technologies covering foods, processing, IT, BT, NT, CT, etc. in direct collaborations between

1) 본 연구는 농수산물유통공사가 발주한 「농공상 융합형 중소기업 지원 실효성 확보 방안」 연구를 기초로 하였음

agricultural and fishery business people and the owners of SMEs.

For determining the basic direction of supporting the growth of SMEs converged with agriculture, industry, and commerce, a step-by-step approach that extends the range of support across convergence activities of agriculture, industry, and commerce in the future is necessary after starting from supporting management bodies (companies) using the complimentary measures provided by related laws.

I. 서론

1. 배경

농어업자와 중소기업간의 공동융합사업 추진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제도는 미흡한 실정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농업인, 농업법인을 위주로 지원하고 있고, 중소기업청은 일반 제조업 위주로 지원하고 있어 지원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농림수산식품 R&D 규모는 정부 R&D의 5.8%수준으로 제품개발 및 사업화시 융합기업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유인도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제65차 비상경제대책회의(‘10.7.8)에서 농어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위한 농·공·상 융합형 중소기업 육성전략을 확정 발표하였다. 농림수산식품부와 중소기업청이 합동으로 “농·공·상 융합형 중소기업 육성지원단(단장 : 농식품부·중기청 1급)”을 구성하여 5대 분야별 세부실행계획을 확정·추진하기로 하였다.

2. 농공상 융합의 의미와 개념

(1) 융합의 개념과 농공상 융합의 의미

농공상 융합의 개념을 정의하기 위해서는 융합의 개념과 융합을 위한 내재적 의미를 살려야 한다. 융합(融合)의 사전적 의미는 녹아서 하나로 합침을 의미한다. 그리고, 농공상 융합은 농림어업, 공업, 상업이 서로 연대하거나 협력하여 상호이익을 증대시키면서 상생하는 네트워크 경제의 속성과 상호간 융복합화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는 컨버전스(융합, convergence)의 속성을 지녔다고 할 수 있다.

농공상 상생협력을 위한 네트워크 경제(network economics)²⁾는 지속가능한 농공상 협력을 위해 근간이 될 수 있는 이론적 배경이라고 할 수 있다. 네트워크경제의 특성은 첫째, 자율적 기업들로 구성되며, 네트워크 기업들은 자원과 리스크를 서로 공유함으로써 이익을 얻고 그에 대한 대가로 자신의 주권을 어느 정도 포기한다. 둘째, 동기부여의 원천은 상호 호혜와 신뢰를 바탕으로 한다. 셋째, 공급루트는 제조업체로부터 유통업체를 거쳐 최종 소비단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의 전문 지식과 기술을 융합해 조화롭게 조정한다. 넷째, 상생(윈-윈)을 성공의 근원으로 삼고, 마지막으로 경쟁보다는 협력의 장을 마련하여 활동한다(제러미 리프킨, 2005).

네트워크시스템의 종류는 첫째, 공급업체 네트워크로써 디자인에서부터 부품 제조에 이르기까지 모든 input을 하청 받는 형식, 둘째, 생산업체 네트워크로 생산설비, 자금, 인적자원을 공유해 제공하는 상품과 용역의 품목수를 늘이고, 시장을 넓히며, 리스크 비용을 줄이는 회사들로 구성하는 형태, 셋째, 고객 네트워크는 제조업체, 유통업체, 마케팅 채널, 최종사용자를 연결하는 네트워크이며, 넷째, 표준 제휴 네트워크는 업계 선두가 확립한 기술 표준에 맞추기 위해 특정 분야에서 가능한 많은 업체들을 끌어 모으는 형태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기술 협력 네트워크는 제품 라인의 연구 및 개발 분야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2) 여기서 “네트워크 경제”란 제러미 리프킨의 『유럽피언 드림, 2005』에서 주장한 개념을 도입한 것이다.

말한다. 따라서 농공상 융합에서도 네트워크 경제의 공유와 상호이익, 상호호혜와 신뢰, 지식과 기술의 융합, 상생의 원리를 근간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두 번째의 농공상 융합의 내재적 성격인 컨버전스(융합, convergence)의 개념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컨버전스는 한 곳으로 모인다는 수렴의 의미로 주로 수학분야에서 사용하였다. 기술적 의미에서 컨버전스는 1979년 MIT 니그로폰테 교수가 방송, 컴퓨터, 출판 등의 융합을 미디어 컨버전스라고 언급한 이후 보편화(민병석 외, 2005)되었다. 또한 무이(Mui) 등은 컨버전스를 일으키는 요인으로 디지털화(Digitalization), 글로벌화(globalization), 그리고 비규제화(deregulation)라고 강조하였다. 융합(convergence)은 21세기에 접어들어 산업분야뿐만 아니라 통신과 방송, 예술과 과학, 학문과 학제 간 나아가 정치 분야에 이르기까지 사회 전반에 걸쳐 하나의 아이콘으로 등장하였다. 이미 미국, 유럽을 비롯한 선진국들은 2001년부터 IT, BT, NT, 인지과학 등의 융합과 이들 기술에 인문사회과학까지 융합하는 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병삼 외(2007) 연구에 따르면 컨버전스의 종류로서 첫째, 상품(제품, 서비스)이 결합되는 ‘상품 컨버전스’, 둘째, 기술이 결합되는 ‘기술 컨버전스’, 셋째, 시장이 유사해지는 ‘시장 컨버전스’로 구분된다고 하였다. 상품 컨버전스는 한 상품의 기능이 다른 종류의 상품에 더해져 새로운 상품을 창출하는 것이고, “기술 컨버전스”는 한 기술이 다른 분야에 사용되어 신기술 및 신상품을 창출하는 것이고, “시장 컨버전스”는 한 시장의 특성이 다른 시장의 특성과 유사해지는 현상을 말한다. 농공상 융합에서는 분야간 이루어지고 있는 컨버전스의 세계적 흐름을 받아 들여 농공상 모두의 발전적 융합화를 지향하고, 상품 컨버전스와 기술 컨버전스의 방향으로 정책화하여야 된다.

(2) 농상공 융합형 중소기업의 개념

일본은 2008년부터 “농공상 연대”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농공상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의 농상공 연대의 개념은 “중소기업자와 농림어업자의 제휴에 의한 사업활동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4항에 잘 나타나 있다. “「농상공 등 제휴사업」이란 중소기업의 경영향상 및 농림어업 경영의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중소기업자와 농림 어업자가 유기적으로 제휴해 실시하는 사업이며, 해당 중소기업자 및 해당 농림 어업자가 각각의 경영자원을 유효하게 활용하고, 신상품의 개발, 생산 혹은 수요 개척 또는 새로운 서비스의 개발, 제공 혹은 수요의 개척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우리의 경우, “농공상 융합형 중소기업 육성전략(2010년 7월)”에서 밝힌 농공상 융합형 중소기업의 정의는 “농어업인과 중소기업이 유기적으로 원료조달, 제조가공, 기술개발을 연계하여 산업 활성화 및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는 것이다. 즉, 하나의 제품 생산을 위해 농림어업, 공업, 상업이 효과적인 융합체(연대)를 형성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개념화 하고 있다.

그리고 경영형태별 유형은 첫째, “공동출자형”으로 농어업인과 기업이 공동출자하여 중소기업 설립하는 경우라고 하였다. 대표적 사례로 (주)국순당 고창명주를 언급하였다. 이 기업의 경우, 복분자 생산농가가 70%, (주)국순당이 30%의 지분을 투자하였다. 둘째, “전략적 제휴형”으로 농어업인과 중소기업이 안정적인 원료조달, 신제품 개발 및 판매를 위해 장기계약을 체결하여 상호 협력하는 경우로 정의하였다. 무주 산머루 클러스터사업단과 (주)샘표식품이 MOU를 체결하여 협력하는 경우를 대표적 사례로 소개하였다. 셋째, “농어업인 경영형”은 농어업인 또는 생산자단체가 제조·가공단계 까지 경영을 확장하여 가공식품, 미용제품 등을 생산하는 경우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농공상 융합형 중소기업의 개념을 주체간 협력과 비즈니

스간 협력으로 나눌 것이다. 주체(법인체)간 협력 및 융합하는 농공상 융합형 중소기업은 “농림어업인과 중소기업인이 직접적으로 연계하고 융합함으로써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각각의 경영자원을 활용하여 사업활동을 촉진시키는 경영체”라고 정의한다. 그리고, 비즈니스간 협력하는 농공상 융합형 중소기업은 “농수산물을 활용하여 식품, 가공, IT·BT·NT·CT를 융복합화하여 사업화하는 경영체, 또는 1차산업×2차산업, 1차산업×3차산업, 1차산업×2차산업×3차산업을 융복합화하여 사업화하는 경영체”라고 정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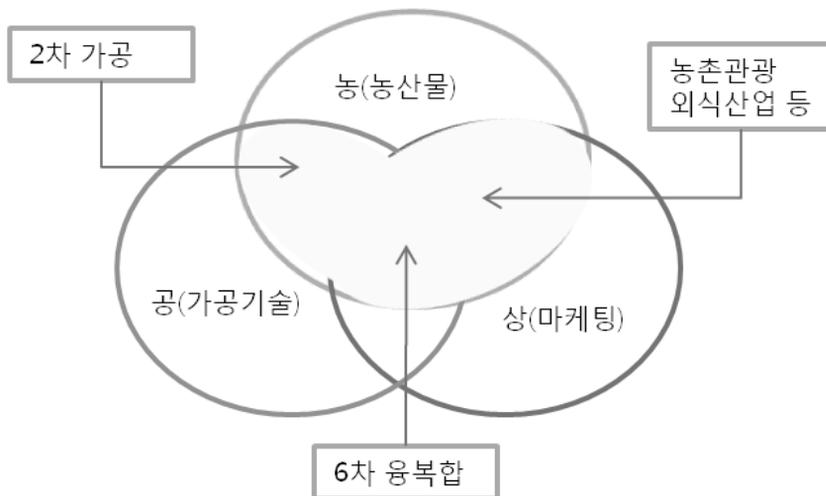


그림1. 농공상 융합 개념도
 자료: 김용렬 외(2011)

이러한 농공상 융합형 중소기업이 행하는 경영활동은 농공상 융복합형, 농공융합형, 농상융합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농공상 융복합형은 농(1차산업)·공(2차산업)·상(3차산업)이 융복합화하여 사업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이른바 ‘6차산업화’로 대변되는 형태라고 할 수 있다. 농수산물을 원료로 하여 가공기술을 활용한 가공식품을 생산하고, 이를 마케팅 기술을 활용하여 판매하는 형태가 일체화된 형태

라고 할 수 있다. 농공융합형은 농(1차산업)·공(2차산업)이 융복합화되거나 협력하는 형태를 통해 사업화되는 경우이다. 가장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 형태라고 할 수 있는데, 농수산물을 생산하는 농어업인(단체)가 생산과 가공을 함께 할 수도 있고, 가공을 전문으로 하는 가공업체와 협력관계를 통해서 사업화 할 수 있는 형태라고 할 수 있다. 농상융합형은 농(1차산업)·상(3차산업)이 융복합화 혹은 협력하는 형태이다. 생산된 농수산물을 마케팅 기술을 활용하여 판매하는 형태로 농촌관광, 도농교류, 직거래 등의 형태로 반영될 수도 있고, 생산된 농수산물을 유통전문업체와 연계하여 체계적인 판매를 하는 형태도 가능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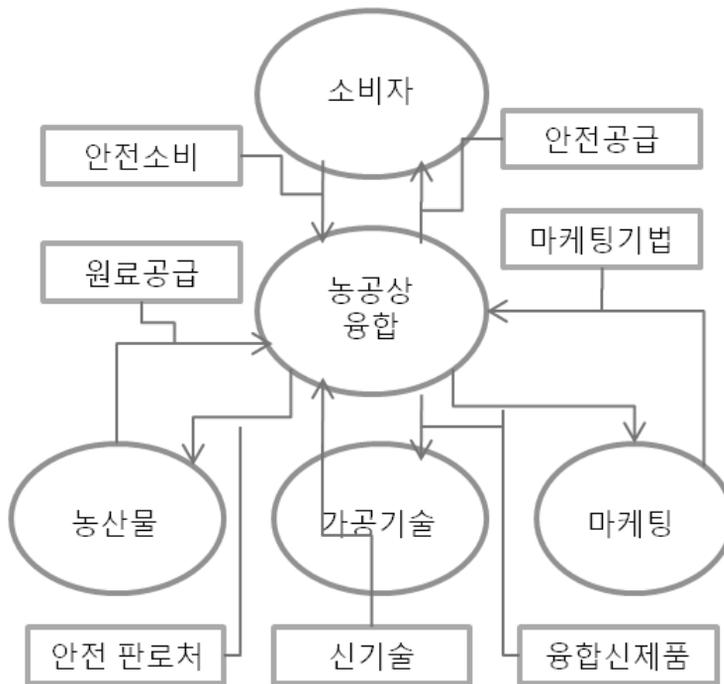


그림 2. 농공상 융합 서비스 흐름
 자료: 김용렬 외(2011)

II. 농공상 융합형 중소기업 관련 정책 분석

1. 농림수산식품부 관련 정책

(1) 농공상 융합 관련 농림수산사업

농림수산식품부의 농림수산업사업 104개에서 농공상 융합형 중소기업에 적용 가능한 사업은 27개 정도로 요약할 수 있다. 농림수산식품부의 농림수산사업 104개에서 농공상 융합형 중소기업에 적용 가능한 27개 사업의 지원분야로는 자금(운영, 시설, 원료구입), 기술, 유통, 수출(마케팅), 컨설팅, 특허, 인증, 교육 및 기타와 종합(혁신역량강화) 등이 있다.

농공상 융합형 중소기업에 적용 가능한 27개 사업에서 자금부문에는 22개 사업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기술은 1개, 유통 및 수출은 9개, 컨설팅 등 2개, 교육 3개, 혁신역량 강화(종합) 2개로 분류할 수 있다. 종합(혁신역량 강화)적인 부문의 사업은 지원사업에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사업이 총 망라되어 있다. 농공상 융합형 중소기업과 관련해서 농림수산식품부의 지원 정책 사업은 시설, 운영 중심의 금융지원과 유통부문의 지원에 집중되어 있다. 상대적으로 인력, 기술, 컨설팅, 교육, 세제 등의 지원은 빈약하다.

(2) 농공상 융합형 중소기업의 농림수산사업 적용 가능성

농공상 융합형 중소기업에 적용 가능한 27개 사업의 지원 자격과 요건을 기준으로 농공상 융합형 경영체에 적용 가능 방법으로는 농림수산사업에 농공상 융합형 경영체를 지원자격에 포함하고, 자격요건에서 우선순위와 사업평가에서 가점 등을 부여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

사업별로 자세히 살펴보면, 수출 경영체는 가점을 부여하거나 우선 순위를 적용할 수 있을 것이고, 농산물표준화사업에서는 농림수산사업의 지원자격에서 농공상

융합형 경영체는 2순위에 포함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 농식품소비자산지상생 협력사업에서는 식품가공원료매입지원에서 농공상 융합형 경영체도 전통주 제조업체 동일한 혜택을 부여하고, 농산물직거래 매취지원사업에서는 농공상융합형 경영체도 생산자단체와 동일한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 농어촌자원 복합산업화지원 사업에서는 농공상 융합형 경영체에 가점을 부여하고, 농공상융합형 경영체는 영업개시일이 1년 미만이라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요건을 새로이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농공상 융합형 중소기업(경영체)에 농림수산사업의 적용 가능성을 종합하면, 첫째, 지원대상에 포함시키는 것, 둘째, 지원자격과 요건에서 우선 순위 부여와 가점 부여 및 요건의 탄력적 적용이다. 농림수산사업에서 지원대상과 지원자격 및 요건을 새로이 정비한다면 지역의 자원을 활용한 농공상 융합형 중소기업이 지역경제의 활성화의 매개체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다.

<표 1> 농공상 융합형 중소기업 관련 농림수산사업의 지원분야

사업명	지원 분야					
	운영 시설 원료	기술	유통 수출	컨설팅 특허 인증	교육 기타	혁신 역량 종합
품종심사 및 재배시험사업		0		0		
우수품종증식보급사업	0					
해외농업개발지원사업	0					
농산물물류표준화사업	0					
농산물표준규격공동출하사업			0			
산지유통활성화사업	0		0			
원예농산물저온유통체계구축사업	0		0		0	
인삼약용작물계열화사업	0		0			
인삼생산유통시설현대화사업			0	0		
농식품소비자산지상생협력사업	0					
농산물브랜드육성지원사업	0		0		0	
농축산물판매촉진사업	0		0			
농산물수출업체 운영활성화지원사업	0					
전통발효식품육성지원사업	0					
농식품시설현대화	0			0		
생산자용복합형식품기업육성지원사업	0					
천일염산업육성지원사업	0		0			
농업자금이차보전	0					
산립사업종합자금지원사업	0					
임산물해외시장개척사업	0		0		0	
사료산업종합지원사업	0					
농어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						0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						0
수산물가공산업육성사업	0					
농산물산지유통센터건립지원사업	0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건립사업	0					
수산물유통시설건립사업	0					

주: 향토산업육성사업은 포괄보조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 이관되어, 농림수산사업에서 제외(2010. 4)

2. 중소기업청 관련 정책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으로 120여개의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분야별 주요 사업에는 정책자금, 기술혁신, 인력지원, 판로지원, 수출지원, 창업 및 사업전환 지원, 컨설팅 지원 및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지원 등의 사업이 있다. 또한, 중소기업청과 별도로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중앙회 등 13개 유관기관에서 시행하는 사업과 정부의 위탁사업 등 100여개 사업이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정책자금 사업에는 창업기업지원자금, 개발기술사업화자금, 신성장기반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 사업전환자금 등이 있다. 인력지원 사업에는 산학연계 맞춤형 인력양성 사업, 인력채용패키지사업, 산업기능 요원제도, 중소기업장기재직자 주택 우선공급, 대학생 중소기업체험활동 등이 있다. 컨설팅 지원에는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 녹색경영평가진단개선 프로그램 등이 있다.

중소기업의 지원 정책은 해당 기업의 성장 단계별 진행에 필요한 사업을 위주로 지원하고 있지만, 농림수산물식품부의 농림수산사업은 농공상 융합형 중소기업만이 아니라 농업, 농촌과 관련한 광범위한 지원 정책이 포괄되어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농공상 융합형 중소기업과 관련한 정책 사업은 기존의 부처별 정책을 종합하여 활용하고, 융합형 중소기업에 필요한 추가적인 지원사업을 만들어 지원해야 할 것이다.

(1) 중소기업별 우대 정책

이노비즈, 벤처기업 등 중소기업별 우대 정책을 시행하여 해당 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이노비즈 기업의 우대 정책에는 R&D지원, 금융지원, 인력지원, 판로지원(수출), 기타 지원 등의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R&D 지원에는 기술혁신개발, 이전기술개발, 구매조건부기술개발, 기업협동형공동기술개발, 창업보육기술개발사업(가점2점), 산학연공동기술개발, 산학협력실, 대학내 기업부설연구소 설치사업, 생산정보화(가점3점), 불법기술유출 방지사업(가점2점), 쿠폰제경영컨설팅(5점), 해

외유명인증규격 획득지원(5점), 중소기업 기술혁신 소그룹지원(이노비즈 대상) 등이 활용되고 있다.

이노비즈 기업의 금융 우대 지원사업에는 부분보증비율 전액보증, 기업당 보증한도 상향(이행보증, 수출입금융보증, 시설자금보증, 50억원, 일반기업 30억원), 보증료감면(0.2%, 신용등급 우량기업은 0.4%까지 감면가능) 등이 있으며, 인력지원 사업에는 병역지정업체(전문연구, 산업기능요원) 추천우대가 있다. 판로지원(수출) 사업에는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신인도 평가부문: -2~3점) 우대, 고시금액 이상시 1.5점 우대(고시금액 미만 -2점),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 계약이행능력 심사시 신인도 평가1.5점 우대, 민간해외지원센터 활용사업 참여시 지원비율을 일반기업 대비 10% 상향, 글로벌브랜드사업 참여자격 완화 적용(수출 200만불 이상, 일반기업 500만불 이상), 조달청의 우수제품 선정시 우대(8점, 일반기업 6점)을 해 준다.

중소기업은 해당 기업의 특성에 맞는 우대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데, 지원사업의 요건과 대상을 엄격히 구분하여 총괄지원과 해당기업별 우대 사업을 구분하여 지원하고 있다. 벤처기업에 대한 우대 정책에는 창업, 세제, 금융 등이 있다. 창업 지원에는 법인설립, 창업주체, 산업재산권출자 등의 분야별 지원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세제지원 정책에는 법인세, 소득세 감면, 등록세 면제, 취득세 면제, 재산세 감면 등의 사업이 있다. 금융지원 정책에는 코스닥 등록, 정책자금, 신용보증, 투자지원 등의 사업이 있다.

(3) 중소기업 조세지원 제도

중소기업청의 조세지원 정책에는 크게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원과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투자촉진을 위한 세액공제(법인세 및 소득세) 및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등이 있다.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지원내용으로는 지역, 업종, 기업 규모에 따라 법인세·소득세의 5~30%를 감면해 주고 있다.

투자촉진을 위한 세액공제 사업에는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임시투자세액공제, 연구·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생산성향상 시설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안전설비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에너지절약 시설에 대한 투자 세액공제, 환경보전설비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등이 있다. 사업별 법인세와 소득세도 공제하고 있다. 연구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는 연구시험용시설, 직업 훈련용시설, 신기술 사업화를 위한 사업용자산(10%), 생산성향상 시설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하고 있다. 신성장동력산업 원천기술 분야는 연구·인력개발비의 30%를 법인세·소득에서 공제해주고 있다.

<표 2> 벤처기업 주요 지원정책

구 분		주요 지원내용
창업	법인설립	○설립자본금 5백만원 이상('05.7.29개정) * 일반기업은 5천만원 이상
	교수·연구원 창업	○교수·연구원(교육공무원등)이 벤처기업을 창업 하거나 근무하기 위해 휴직가능(3년이내) ○교수·연구원(교육공무원등)이 벤처기업의 대표 또는 임직원 겸임·겸직 가능
	산업재산권출자	○벤처기업에 대한 현물출자 대상에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등의 권리 포함
세제	법인세, 소득세 50% 감면	○창업후 3년이내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기업(창업벤처중소기업)의 경우 50% 감면('09.12.31까지) *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이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경우만 해당
	등록세 면제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벤처확인일로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의 등기에 대한 등록세 면제
	취득세 면제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벤처확인일로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해 취득세 면제
	재산세 50% 감면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당해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소유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해 벤처확인일 로부터 5년간 재산세의 50% 감면
금융	코스닥 등록	○등록심사시 우대(자본금 및 자기자본기준 하향적용, 설립연수, 부채비율등 적용면제)
	정책자금	○중소기업정책자금 심사시 우대(가점, 시설개선자금 사정시 우대)
	신용보증	○신용보증 심사시 우대(보증한도 확대, 보증료율 0.2% 감면등) ○기술력 및 신용도 우수 기업에 대한 연대보증 기준 완화
	투자지원	○창업투자회사의 투자대상에 업력제한 없음 * 일반기업은 창업후 7년이내 기업만 해당

3. 시사점

중소기업청에서는 중소기업 지원 관련 다양한 정책들을 홈페이지를 통해서 제공하여 사용자의 편리성을 도모하고 있다. 지원사업별³⁾로 금융부분의 정책이 전체 561개 정책에서 144개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는 기술지원(1), 유통 및 수출지원(3), 컨설팅 및 특허지원(1)로 총 5개 사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농촌진흥청은 기술부문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농어업과 관련한 산업의 각종 지원제도는 단순히 시장개방과 산업화에 따른 상대적 피해 대책으로 추진되었기 때문에 농업부문의 중소기업은 생산성의 혁신과 기업으로 성장 및 성숙기 등으로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

농림수산사업의 대부분은 생산자, 농업인단체 및 지자체 등이 사업의 주체가 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농림수산업이 대상인 반면 중소기업의 지원정책은 해당 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정책이므로 세부적으로 차이가 나타난다. 산업부문을 대상으로 한 농림수산사업 정책은 중소기업 정책보다 보다 포괄적이고 광범위하다. 따라서 농공상 융합형 중소기업에 대한 별도의 지원체계와 지원사업이 필요하다. 기존 부처별 지원정책은 활용하고, 별도의 추가적인 지원사업은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융합형 중소기업의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

농공상 융합형 중소기업과 관련해서 농림수산식품부의 지원 정책 사업은 시설, 운영 중심의 금융지원과 유통부문의 지원에 집중되어 있다. 상대적으로 인력, 기술, 컨설팅, 교육, 세제 등의 지원은 빈약하므로, 융합형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마련할 때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지역의 자원과 인력 등을 활용하여 사업의 경영을 활성화하기 위해 농공상 융합형 중소기업(경영체)도 농업회사법인에 준하는 조세감면 정책이 필요하다. 이러한 경우, 농업법인에서 농공상 융합형 중소기업으로의 전환 활성화를 용이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3) 중기청 비즈인포에서 2010. 11월 기준으로 제공되는 정부부처별 지원사업별 현황자료를 인용함.

Ⅲ. 농공상 융합형 중소기업(경영체) 협력 사례와 시사점

1. 농공상 협력 사례

(1) 충청남도 서산시 생강한과 사업

서산시농업기술센터는 16개 한과업체가 중심이 되는 생강한과협의회를 조직하여 생강한과업체간의 정보교환 및 상호교류를 확대하고 있다. 이들 대부분 업체는 자체적으로 참쌀 농사를 지어 이를 한과제조의 원료로 활용하고 있다. 업체의 규모는 가내수공업 형태의 소규모에서부터 중규모 사업장까지 다양하다. 소규모 업체는 인터넷 판매와 전화판매를 중심으로 하고 있고, 중규모의 업체는 인터넷 판매와 대규모 과자류 업체와 계약을 통한 납품도 하고 있다. 이 사례의 경우 농업기술센터가 신뢰성 있는 중간조직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는 것이다. 업체간 경쟁의식과 지나친 자긍심으로 인한 불편함을 농업기술센터가 다리 역할을 함으로써 교류와 정보교환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항목	내용	비고
농공상 협력 대상 품목	한과	공공조직의 신뢰감 있는 중간조직 역할과 6차 산업화
농공상 협력 사업 부분	원료, 판매	
농공상 협력 참여 추진주체	서산시농업기술센터, 생산농가, 한과업체	
시사점	— 자체 생산한 참쌀 원료 활용 — 생강한과협의회 조직을 통한 협력 — 농업기술센터의 중간조직 역할 — 안정적 판로확보를 통한 농가의 소득창출	

(2)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주)동천과 품앗이단

2007년 녹차농약과동에 따른 안전성 확보를 위해 (주)동천과 녹차생산농가가 품

앗이단을 구성하여 노동력 절감과 안전성 확보, 안정적인 원료 조달과 녹차수매를 시스템화 하였다. 품앗이단은 (주)동천에서 녹차생산농가에게 아이디어를 제시하였고, 녹차농가가 자율적으로 7-8농가 규모로 구성하였다. 품앗이단은 (주)동천에게 안전한 녹차를 제공하기 위해 무농약 친환경농법을 실시하여 무농약 인증을 획득하였고, 현재는 유기농으로 전환하여 유기농 인증을 시도하고 있다. 안전성 확보를 위해 자율적으로 농약살포나 비산농약 등을 모니터링함으로써 자율감시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그리고 개별농가가 혼자서 녹차농사를 하게 되면 인건비 등 막대한 생산비용이 들어가지만 품앗이단을 구성함으로써 노동비 절감에 큰 효과를 보고 있다.

(주)동천은 품앗이단이 생산한 녹차를 전량 수매함으로써 농가에게 안정적인 판로를 제공하고 있다. 동천은 1차 원료를 가공해서 대기업에 납품하는 형태로 판로처를 개척하고 있다. 본 사례는 생산농가가 안전성을 확보해서 녹차 생산을 책임지고, 유통과 판매는 (주)동천이 책임지는 농공협력의 시스템이다.

항목	내용	비고
농공상 협력 대상 품목	녹차	농가는 안전성 확보 기업은 안정적 판로 제공 농가와 기업간의 신뢰 확고 농공협력
농공상 협력 사업 부분	안전한 원료, 안정적인 판로	
농공상 협력 참여 추진주체	녹차생산농가(품앗이단), (주)동천	
시사점	—품앗이단을 결성해 자체적으로 안전한 녹차 생산 —녹차안전성 확보를 위한 자율감시시스템 구축 —안정적 판로확보를 통한 농가의 소득창출 —(주)동천은 안정적인 판로 제공과 판매처 개척	

(3) 경상북도 문경시 오미자 사업

문경시는 (주)광동제약과 업무협약을 통해 (주)광동제약은 상품개발 및 판매와 연구개발 그리고 오미자제품의 판매증진을 위한 홍보를 한다. 생산농가는 (주)광동제약에 오미자를 납품하고 문경시는 생산농가를 관리 한다.

항목	내용	비고
농공상 협력 대상 품목	오미자	문경시는 전국 오미자 생산량의 45%를 차지하고 있음
농공상 협력 사업 부분	상품개발, 판매, 학술연구	
농공상 협력 참여 추진주체	문경시, 생산농가 —중견기업(광동제약)	
시사점	—다자간 업무체결로 오미자산업의 활성화와 오미자의 안정적 판로확보를 통한 농가의 소득창출을 함	

(4) 강원도 평창군 메밀사업

봉평농협은 메밀농가의 메밀을 수매하여 가공업체에 제공 및 가공을 하고 있으며 정부의 지원을 받는 3곳의 법인은 자체 수매 및 농협에서의 공급 등을 통하여 가공제품을 개발 및 판매하고 있다. 이효석문화제라는 축제에서 시작하여 메밀이라는 지역농산물을 이용하여 가공품 및 주변 식당가가 메밀로 특성화되면서 봉평면만의 특색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메밀을 수매하는 곳이 농협이외의 개인 법인 등으로 분산이 되어 있어 물량 파악 및 일정가격으로의 공급에 있어 어려움이 있다. 2009년 37만 명에 이르는 관광객이 방문하고,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171억 원인 이효석문화제 축제를 통해 메밀을 널리 알리고 관련 가공사업의 활발한 활동으로 명실상부한 메밀의 고장으로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였다. 또한 가공 사업에 대한

정부의 관심과 지원, 연구를 위한 대학과의 연계를 통해 다양한 상품을 개발하고 있다.

항목	내용	비고
농공상 협력 대상 품목	메밀	2003년 이후 생산면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나 평창은 현재 80ha로 메밀산업은 초기단계임
농공상 협력 사업 부분	상품개발, 판매	
농공상 협력 참여 추진주체	중소기업, 봉평농협 영농조합법인	
시사점	—축제를 통한 관련 상공인 및 주민의식변화로 메밀이라는 농산물을 지역 특산물로 만들었으며 이를 통해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도모함	

(5) 강원도 화천군 토마토

화천군과 화천토마토영농법인은 토마토 가공 산업과의 연계를 시도하여 (주)오뚜기에 연간 170여 톤, 약 1억 7천만 원의 원료를 공급하고 있다. 화천토마토영농법인의 재배 농가들이 (주)오뚜기인 대기업과 손잡고 생산된 토마토 공급 및 마케팅 진행을 통해 농가는 토마토를 대량 공급할 수 있는 판로를 찾고, 기업은 생산지에서 좋은 원료를 구매함으로써 서로간의 이득을 얻고 있다. 화천군이 지역 내 토마토 재배농가의 수취 값을 향상시키기 위해 식품업체인 오뚜기를 방문하여 소스 사업에 대한 협약을 추진함에 따라 군은 지역 활성화를, 기업은 생산원료를 체계적 가공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는 등의 군의 지원 속에 서로간의 상생을 도모하고 있다. 화천군은 질 높은 토마토를 생산하기 위해 농가를 관리를 함으로서 좋은 토마토를 지속적으로 생산하고 있다.

항목	내용	비고
농공상 협력 대상 품목	토마토	화천군은 토마토 전체 생산량 중 0.6%를 차지하고 있음
농공상 협력 사업 부분	축제 및 상품개발	
농공상 협력 참여 추진주체	화천군, (주)오뚜기 화천토마토영농조합법인	
시사점	—기업과 연계 통해 농가의 안정적 소득관로 개척을 함	

(6) 전라북도 고창군 복분자 사업 개요

고창군은 군·생산농가·농협·가공업체가 협력 체제를 구축해 농가가 생산하면 농협이 수매해 주류 및 식품가공업체에 원료를 공급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 생산조직(농업법인) 중심의 규모화 된 생산 및 품질 고급화를 추진하고 있다. 농협 유통사업단은 생과 수매 및 공급창구의 일원화를 통해 복분자의 품질별 차등수를 두고 수매 저장기반을 강화하였다.

항목	내용	비고
농공상 협력 대상 품목	복분자	전국의 45%의 복분자를 생산하고 있는 고창
농공상 협력 사업 부분	상품개발, 판매, 유통	
농공상 협력 참여 추진주체	(주)국순당, 고창군, 생산농가	
시사점	—고창군이 복분자에 대한 선택과 집중으로 부가가치 산업으로 부상함	

(7) 강원도 양구군 민들레 영농조합

2004년 4월부터 남면 청리 8농가 스스로 민들레재배를 시작하여 양구민들레작목

반을 결성하였고, 2006. 7월 가공제품을 개발(민들레녹즙, 엑기스, 환, 분말, 차, 비누 등)하였다. 2006년 10월부터 민들레녹즙 생산해서 판매하기 시작하였는데 시설은 양구군 자체에서 지원(13,000천원)하였다. 2007년 3월 5일 양구민들레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하여 6.7ha 면적에 민들레를 재배하였다. 재배면적과 참여농가가 점차늘어나 2010년 현재 총 재배면적은 30ha로 늘었고, 참여농가 또한 53농가로 증가하였다.

재배민들레는 기후·온도·토양의 영향에 민감하여 아무 곳에서나 잘 자라지 않는데 양구민들레영농법인은 2기작과 연작이 가능한 자체 재배기술 확보하였다. 민들레 100% 녹즙, 민들레 70% 녹즙, 민들레엑기스 등을 생산해서 소비자의 기호에 맞게 제품을 개발하였다. 민들레재배농가가 스스로 자조금 100천원/330㎡을 적립해서 생산⇨가공⇨유통(홍보·마케팅)⇨자립형 농공상 융·복합산업 체계를 구축하고 있어 지속적인 성장을 하고 있다.

민들레 산업육성을 위한 우위성을 확보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지원책을 적절히 활용하고 있으며, 지자체가 중간 매개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 영농조합법인이 농공상 융합형 중소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및 학계 등의 협력과 정부의 지원정책이 수반되어야 함을 잘 보여주는 사례이다.

항목	내용	비고
농공상 협력 대상 품목	민들레	2004년 8농가가 민들레재배 시작하여 2006년 가공제품 개발. 현재 민들레 재배 면적이 30ha로 늘어났으며 참여농가 53농가로 확대되었음
농공상 협력 사업 부분	상품개발, 판매	
농공상 협력 참여 추진주체	영농조합법인, 가공회사, 중소기업	
시사점	민들레 제품이 건강보조식품으로 인기를 끌면서 참여농가가 증가하게 되었고, 가공제품 생산시설도 지자체의 도움으로 자체공장을 설립하기에 이르렀음. 또한 판매를 전문기업과 계약을 체결해서 해결하고 있음	

2. 시사점

농공상 융합기업과 관련성이 높은 업종은 식료품과 음료 제조업이라 할 수 있으며, 이들 업종은 농공상 융합기업에 대한 정의에서 언급하고 있는 바와 같이 농수 산물을 원료로 하는 대표적인 업종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좋은 제품을 생산하고도 판로에 애로가 있어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는데 성공한 사례에서는 일반기업과 잘 연계해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있다. 따라서 판로문제는 농상의 협력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농업법인 중에서 영농조합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농업회사 940개소, 일반회사는 43개소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는 영농조합이 법적 혜택이 많아 선호하는 경우도 있고, 또한 농촌지역에서 일반회사나 농업회사를 운영하는 것이 쉽지 않음을 반증하고 있다. 따라서 농공상 융합형 기업은 영농조합의 정부지원과 농업회사 법인의 경영효율화 방안을 좀 더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형태가 되어야 할 것이다.

농공상 융합형 중소기업(경영체) 협력 사례는 전략적 제휴형, 농업인경영형, 공동출자형으로 구분하고 있다. 민간기업과 연계하고 있는 오미자의 사례에서처럼 다자간(농가, 지자체, 기업, 연구소)의 업무체결은 농산물의 원활한 수급과 지속적인 제품개발 및 안정적 판로 확보가 가능토록 했다. 따라서 농공상 협력은 경영체 성장에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함을 알 수 있다.

현재 농공상 융합형 중소기업(경영체) 사례에서 보는 것과 같이, 현재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기업이 참여하는 형식일 경우 성공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사업의 활성화와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농촌지역에서 농공상 융합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현재 중요하게 역할을 하고 있는 지자체뿐만 아니라 민간부분의 농공상융합을 촉진할 수 있는 매개체 육성이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해주고 있다.

IV. 일본의 농상공연대와 6차 산업화 제도 분석

1. 일본의 농공상 연대

(1) 농공상연대 지원을 위한 시책

일본의 농상공 연대 지원을 위한 시책을 살펴 보면, 첫째, 지역상품에 대한 판매 촉진·신제품 개발지원이다. 이는 각각의 지역산품이나 전통공예품을 정리·체계화 하고, 지역전체의 매력을 보급할 수 있는 제품의 브랜드화 및 국내외 홍보하는 것을 중점으로 하고 있다. 세부사항으로는 상점가의 공실을 활용한 농산물 직매소 설치하고, 상점가 활성화 대책 등과도 연계하며, 성공 보수형으로 판매개척을 하는 민간 비즈니스의 인지도 향상 및 신용력 확보, 「중소기업 지역 자원활용 프로그램」, 「광역종합 관광·고객유치 서비스 지원사업」, 및 「신연계 대책지원 사업」에 충실하도록 하는 것이다.

둘째, 지역산업의 이노베이션 촉진이다. 지역특산물을 생산자가 염가로 직판할 수 있는 시스템의 제공 및 전자태그 등을 활용한 생산·유통관리를 지원한다. IT 경영응원대에 의한 중소기업 농업자의 연수, 성공사례 등을 수집·보급한다. 지역을 유지하는 인재육성 및 교류촉진을 위해 「신현역 도전플랜」을 활용하여 제품개발이나 마케팅 등의 노하우(Know-how)를 가진 대기업 퇴직자 또는 가까운 시일에 퇴직을 하는 층을 수년간에 걸쳐 집중 파견하고, 지역에 있어서의 판로개척 등의 대처를 지원한다. 그리고 지역 산학연연계에 통해 지역 과제해결을 깊어지는 중핵인재의 육성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유턴 등 젊은이의 도시와 지방의 교류를 촉진시키고, 지역 활성화를 깊어지는 인재육성하며, 지역의 숨은 인력자원을 발굴하고, 고용창출 및 인재기반구축을 위한 각종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지역텔레워크플라자(work plaza)를 정비한다. 지역의 농공상 연계를 촉진하기 위해 각각의 산업이 가지고 있는 요구·니즈를 조합시킨 신상품개발, 신사업개발 등을 위한 산학연 공동연구그룹이

하는 실용화 연구개발사업을 지원(지역이노베이션협력 프로그램 등)하고 있다.

셋째, 지역의 지적재산의 「창조·보호·활용」을 촉진하는 것이다.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지적재산권 관련 상담에 대해 신속한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체계를 준비한다. 지역 경제산업국과 지역 농업행정국과 공동으로 지역 실정에 맞는 세미나 등을 실시한다. 농림수산분야 지적재산에 대한 전문인재 육성, 농림수산·식품분야의 지적재산정보제공 기반의 정비에 있어 특허유통 데이터베이스의 유효활용에 협력, 지역단체상표제도의 활용을 주지·보급하는데 있어 농림수산성과 연계, 농림수산성과의 유기적 연계를 추진하기 위한 국장급 연락회의 설치, 농림수산물·식품을 수출하는 민간 주체의 시장 확대를 도모하기 위해서 체제의 강화 등도 포함하는 대책을 실시하여 연계강화 추진, 각국의 제도 가운데 일본을 부당하게 취급하는 제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한다.

넷째, 시책이용자의 편의를 위한 지방국 수준에서의 연계를 강화한다. 공동리플렛 작성, 상담창구 등에 양성시책의 상호소개, 공동블록회의 설치 등 시책 이용자의 편의를 위한 지방농업행정국과 지방경제산업국의 연계 강화한다. 다섯째, 농림수산성과의 공동캠페인 실시한다. 캠페인 로고 등의 선정, 대신(大臣) 등의 간부에 의한 「지역공생 캐러밴(caravan)」(현장방문)의 실시, 대신 등의 간부에 의한 매장 판매 등을 실시, 대신 등의 간부와 소매관련 업계단체 등과의 간담회 등을 실시한다. 마지막으로 농공상 연대를 위한 PR이다. ‘농공상 연계 88선’을 작성(농업, 상업, 공업을 연계하여 지역활성화에 대응하고 있는 사례를 전국에서 88군데를 선정하고 전국에 정보 제공하였다.

(2) 시사점

첫째, 지역 중심의 발전 모델이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농림어업 및 중소기업의 상호 연계사업을 추진하여 지역에서 생산하고 유통하며 소비하는(地産·地

流・地消) 산업구조 형성에 기여하였으며 지역내 다양한 네트워크를 통해 지역산업 활성화에 기여. 정부 부처간 칸막이를 제거하여 중앙부처 및 지방정부, 지역 지원기관간 협력네트워크를 통해 지역 특산물의 사업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농어민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있다.

둘째, 지역발전 모델로의 정착 가능성이 크다. 일본의 경우 지역 특성에 적합한 발전모델을 유형화하여 지역발전 및 고용창출의 축으로 활용하고 있다(농공상 연계 사업을 지역경제 활성화의 핵심모델로 활용). 국제경쟁력 거점화 모델을 수립하다. 세계 최첨단의 기술력, 인재 등을 소유하는 연구개발 기반이나 국내 최고 수준의 산업집적을 소유하는 지역을 국제경쟁의 최전선에서 필적해 일본을 견인하는 선도적 모델 클러스터를 구축(예: 차세대항공기 클러스터 등)하는 것이다.

셋째, 농업분야의 창업 및 기업화를 확산시키는 것이다. 농업부문에 대한 민간 R&D 자금의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기업화 전략을 추진하여 농어촌 지역으로의 기업유치, 창업활성화를 통해 농어업의 기업화 촉진하고 소득 및 고용창출로 이어져 농어촌 정주 여건 개선에 기여한다.

2. 일본의 농산어촌 6차 산업화 관련 제도

(1) 취지

6차 산업화제도의 취지는 지역자원을 활용한 농림어업자 등에 의한 신사업의 창출에 관한 시책 및 지역의 농림수산물 이용 촉진에 관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농림어업 등의 진흥을 도모하는 동시에 식료 자급률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농산어촌의 6차 산업화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새로운 시장·부가가치를 창출하고, 농산어촌 지역 고용 확보와 농림어업자 소득 향상을 추진하려 하고 있다.

농림어업자 등에 의한 농림어업 6차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농림어업자 등이

농림수산물 등의 생산 및 그 가공 또는 판매를 일체적으로 행하는 사업에 관한 계획과 동반하여 해당 사업에 도움이 되는 연구 개발 및 그 성과 이용에 관한 계획에 관련된 제도를 창설함과 동시에, 이들 계획의 실시에 필요한 금융 외 지원조치를 강구하고 있다. 농림어업자의 6차 산업화 사업과 지역자원을 활용한 신산업 창출을 지원하는 대책(기간 대책)을 농림어업자가 가공·판매하기 위한 시장을 확대·활성화 시키는 대책(시장확대대책)과 병행하여 실시하고 있다.

(2) 주요내용

주요 지원사업 내용은 첫째, 농림어업자 가공·판매로의 사업 촉진이다. 이것은 농림어업자의 고민을 정성을 다하여 대응하기 위해 종합적 서포트를 하는 인재·체제 확보를 위한 지원이다. 6차 산업화 플래너(가칭)에 의한 전문적 어드바이스, 다양한 서포트 인재 확보 등 적극적인 챌린지를 촉진하는 계기를 만들기 위한 지원(교류회, 기술연수 등)과 농림어업자 등의 사업에 관한 지원(신상품 개발과 판로 개척, 가공·판매시설과 농림어업용 기계 시설 정비 등)을 실시한다. 지적재산권 취득에 관한 정보제공 등 농림수산물·식품 지역 브랜드화 사업 등을 지원한다.

둘째, 농산어촌에 유래하는 자원 활용 촉진이다. 이것은 우선 농산어촌 자원을 활용한 신산업 창출을 위해 필요한 신기술에 대해 채산성과 기술과제 등을 조사·검토하는 사업화 가능성 조사와 사업화가 예상되는 것에 대해서는 시행·시작 및 기술 실증의 지원이다. 또한, 신사업 창출과 연계되는 인재 육성 프로그램 개발·실증을 지원한다. 그리고, 바이오매스·재생가능 에너지 이·활용에 대해 선진 지역에서의 시설정비 지원을 중점화함과 동시에 바이오 연료제조기술 등에 대한 유망기술 실증, 목질·수산 바이오매스 유효활용에 대한 사업을 지원한다. 또한, 재생가능 에너지 고도생산·이용형 농산어촌(스마트 빌리지) 구축을 위한 조사·검토를 실시한다.

셋째, 국내시장활성화이다. 고령자를 위한 가공식품 수요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과제와 대응방향 등을 정리한 가이드라인 작성을 지원함과 동시에 식료품 액세스 곤란도를 객관적으로 추계하기 위한 지표 실용화 사업을 지원한다. 그리고, 국내 시장 활성화에 필요한 기반(인프라)의 정비를 위해 도매시장의 리스 방식에 의한 콜드체인체제 정비 등에 의한 유통 효율화·고도화, 식품산업에 있어서 HACCP 도입에 의한 품질관리 향상과 컨플라이언스 철저 등을 통한 소비자 신뢰확보, 식품 리사이클·루프 구축과 식품로스 삭감 사업 등을 지원한다.

넷째, 해외시장 개척이다. 이를 위해 농수산물·식품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 성장을 기대할 수 있는 동아시아를 중심으로, 상담회 개최를 병행한 사전 마케팅 조사, 사후 추가 지원 등을 일체 실시하는 외에 민간 산지로의 해외 바이어 초빙이나 해외로의 판로활동 등의 사업을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그리고, 국내식품산업 아시아 각국 등으로의 투자, 사업전개에서 애로가 되는 식품·투자 관련 법규제 등에 관한 정보수집·제공과 현지규제에 적응하기 위한 필요한 기술개발 사업을 지원한다. 또한 일본의 종묘 권리가 해외에서도 보호받을 수 있도록 동아시아 각국 제도 정비 추진한다.

다섯째, 품목·산지·담당자 대책이다. 야채·과수 등 품목마다 가진 특성의 차이를 살린 가공·업무용 신제품·신작물 도입하고, 계약 거래 강화와 산지의 수익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산지 스스로가 책정한 수익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실현을 위해 생산·가공·판매분야 사업 등을 지원한다. 또한, 의욕있는 경영체 육성·확보를 도모하기 위해 6차 산업화 추진에 필요한 농업용 기계, 가공·판매시설 정비 등도 지원한다.

여섯째, 6차 산업화 관련 제도 용자이다. 6차 산업화 촉진에 이바지하는 무이자 농업개발자금에 대해 용자한도를 확대함과 동시에 대부한도액을 끌어 올렸다. 또한, 6차 산업화 사업을 할 의욕이 있는 농어업자가 이용 가능한 단기운전 자금제도

를 창설함과 동시에 실제 자금 차입자가 무담보무보증인 등으로 채무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그와 함께 바이오매스 이·활용 시설 정비자금 등 차입과 관련한 이자조성에 대해 조치했다.

일곱째, 농산어촌 교류촉진이다. 『어린이 농산어촌 교류 프로젝트』, 그린 투어리즘, 음식을 비롯한 그 지역의 풍부한 자원을 살려서 농산어촌을 교육, 관광 등의 장소로 활용하는 등 취락 규모의 다양한 도시농촌교류를 촉진하는 사업에 대해 국가가 취락 등에 교부한다.

여덟째, 연구개발 추진이다. 농산어촌 자원을 활용한 신소재, 에너지, 의약품 등의 실용화에 대한 연구개발과 가공·업무용 수요에 대응한 신제품 개발 등을 지원한다. 마지막 기타 사업이다. 6차 산업화에 따른 소득의 향상, 고용 확보 등의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통계조사를 실시한다. 또한, 포획조수를 지역자원으로서 활용하기 위한 처리 가공시설 정비 등을 지원한다.

(3) 시사점

첫째, 『종합화 사업계획』을 세워 융복합화 시도를 통해 부가가치 증대를 꾀한다는 것이다. 농림어업자 등이 스스로 생산한 농림수산물이나 부산물을 이용하고, 자기 스스로 새롭게 상품의 가공·제조나 소비자나 사업자에게 직접 판매 하는 것으로, 부가가치를 향상시켜서, 경영의 개선을 도모한다. 예를 들어, 지금까지 생산만 하고 농협(農協)·어협이나 시장에 판매 위탁해 온 농림어업자나 그 집단 등이 자기 스스로 가공품을 제조해서 판매하거나 직매소를 개설하거나 소매점이나 외식 산업에 직접 판매함으로써 매상을 증대시켜 결과적으로 농림어업 경영의 개선을 추구한다.

둘째, 종합화 사업계획 신청을 단독 또는 공동으로 할 수 있다. 농업자, 임업자, 어업자 개인은 물론, 이들로 조직된 법인이나 단체도 포함한다. 또 법인이나 단체

의 경우는 법인격의 유무나 법인의 형태에 관한 제한은 설정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주식회사, 협동조합 조직, NPO법인, 임의단체 등 폭넓은 조직 형태가 대상이 된다. 법인이나 단체의 경우, 반드시 농림어업자 만으로 구성되어질 필요는 없고, 가공·판매 노하우(know-how)를 소유하는 이업종의 사람이 참여하는 것도 가능하나, 농림어업자가 경영 등의 의사결정권을 가지는 것이 조건이다.

셋째, 종합화 사업계획에서 「촉진 사업자」 지원이 가능하다. 종합화 사업에 열을 올리는 농림어업자 등에 대하여 새로운 방법이나 기술의 도입을 지원하는 등에 의해 종합화 사업이 원활하게 실시되도록 협력하는 사람을 촉진사업자라고 하여 지원한다.

넷째, 연구개발·성과이용사업을 통해 기술적 노하우를 이용할 수 있다. 농림어업자 등이 가공 또는 판매업에 진출할 경우 특히 이바지하는 기술이나 노하우(know-how)에 대해서, ①그 연구개발을 행하는 사업, ②신규 또는 기존의 연구개발 성과를 이용하는 사업 가능하다.

다섯째, 환경, 기후변화 등 녹색성장을 위한 지원도 포함되어 있다. 예를 들어, 농림어업자 등에 의한 가공 또는 판매의 대처를 촉진하기 위해 농림어업자 등이 스스로 또는 촉진 사업자가 소수력 발전을 하는 사업은 종합화 사업의 대상이 된다. 또한 태양광 발전을 하는 사업도 종합화 사업의 대상이 된다.

V. 농공상 협력 활성화 방안

농공상 융합형 중소기업 정책은 아직 제도적으로 완비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우선지원 대상 융합형 중소기업”을 우선 선정해 R&D 등 관련제도의 우대조치를 통한 지원으로 출발해, 향후 농공상 융합 활동 지원으로 확대하는 단계별로 접근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다. 기존 농림수산물부, 중기청, 지식경제부 등의 관련 지원

책과 시너지 발휘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장기적으로는 농공상 융합 활성화를 위한 “(가칭)농어업과 중소기업의 협력 촉진특별법” 제정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지원대상은 농림어업인⁴⁾(법인)과 중소기업인⁵⁾(기업)이 직접적으로 연계하고 융합함으로써 각각의 경영자원을 활용하여 사업활동을 촉진시키는 중소기업(법인)으로 한정한다. 이는 농수산물을 활용하여 식품, 가공, IT·BT·NT·ET를 융복합화하여 사업화하는 중소기업(법인), 또는 1차 산업 x2차 산업, 1차 산업 x3차 산업, 1차 산업 x2차 산업 x3차 산업을 융복합화하여 사업화하는 중소기업(법인)이 해당 될 것이다.

중간조직을 활성화는 제도가 필요하다. 따라서 농공상 융합 지원활동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해당 주체는 NGO, 사회적 기업, 공공기관, 대학, 연구소 등이 될 수 있다. 이들은 농수산물을 활용하여 위에서 언급한 사업들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활동을 중심으로 한다.

따라서 이러한 사항들을 구체화 할 수 있는 사업으로는 농공상 융합 활성화, 융합제품 개발, 판로개척, 중간조직 양성, 인재 양성 지원으로 구성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농공상 융합 활성화 지원사업은 농어업인과 중소기업 간 융합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교류회, 코디네이팅, 융합형 기업 조사연구 등을 지원한다. 농공상 융합 활성화를 위한 중간지원 조직 육성을 목적으로 한다. 둘째, 융합제품 판로개척 지원사업은 농공상 융합에 의해 개발된 제품의 시장조사, 전시회 참가, 파이롯트 슝 설치, 패키지 디자인 설계, 성분분석과 판로확대를 위한 전시회 출품 등 국내외 판로개척을 주로 지원하게 된다.

셋째, 농공상융합기술개발사업이다. 이는 농수산물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제품을

4) 농림어업인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법률 제10220호) 제3조 제2항에 의한 농업인과 어업인을 의미

5) 중소기업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중소기업자의 범위에 의한 자

개발한다. 연구기관이나 대학에서 농공상융합제품 개발하거나, 또는 중소기업이나 영농법인체에 연구전문 코디네이터가 방문하여 신제품 개발을 위한 연구과제 발굴, 공동연구 그룹 결성 등의 참여 촉진을 지원하고, 신기술 개발을 위한 산학 연계 형성 지원한다. 넷째, 농공상융합인재 육성 파트너쉽 사업으로 농업과 상공업이 서로 협력하여 융합할 수 있도록 핵심 인재 양성을 지원한다. 대상은 지역에 소재한 기업, 대학, 공익법인 등의 컨소시엄이다. 산업계는 인재상에 대한 니즈를 제공하고, 교육기관은 교육 콘텐츠를 제공해서 컨소시엄을 통해 인재를 양성한다. 마지막으로, 농공상융합창업촉진센터 지원사업이다. 이것은 농공상이 서로 협력해서 융합제품 개발을 통한 창업 촉진을 유도하고, 농공상 융합에 특화된 창업촉진센터를 지원하는 것이다.

참고 문헌

- 김선기. 2010. 「커뮤니티비즈니스의 개념과 정책방향」, 『자치발전』 5월호, 한국자치발전연구원
- 국회예산정책처. 2009. 「지역전략산업 육성 사업 평가」. 국회.
- 국회예산정책처. 2010. 「지역특화발전특구사업 평가」. 국회.
- 김광익 외 8인. 2007. 「도시권 확정」. 통계청.
- 김영수. 2010. “지역특화산업의 육성 방안”. 미발표 원고
- 김용렬 외. 2011 「농공상 융합형 중소기업 지원 실효성 확보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창현 외. 2006. 「지역 특성을 고려한 농촌 활성화 방안」. 국토연구원.
- 농림수산식품부. 2010. 「농림사업시행 지침서」. 농림수산식품부.
- 농림수산식품부. 2010. 「지역전략식품산업 육성 사업단 선정 계획」. 농림수산식품부.
- 농림수산식품부. 2010. 「향토산업육성사업 추진 방향」. 농림수산식품부.
- 농림수산식품부. 2010. 「광특회계 포괄보조사업 예산 신청 가이드라인」. 농림수산식품부.
- 이동필 외. 1995. 「농촌지역 2·3차 산업 활성화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이동필 외. 2002. 「벤처농기업의 실태와 활성화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이동필 외. 2004. 「도농간 소득 및 발전 격차의 실태와 원인 분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이동필 외. 2008. 「농어촌 산업정책 추진 체계 개편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중소기업청. 2003. 「지역향토산업 육성 기본계획」. 중소기업청.
- 한국개발연구원(KDI), 2006,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 심층 평가」 공개토론회 자료집.
- 홍진기·김선배. 1999. “지역산업정책의 추진방향과 과제”. 산업연구원 <KIET 산업경제>.
- 황태규, 유명희. 2006. 「균형발전시대지역마케팅전략」, 국가균형발전위원회.
-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2006). 「한국 지역축제의 발전방향 정립을 위한 워크숍 자료집」,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 Braczyk, H-J., P. Cooke and M. Heidenreich(eds.). 1998. Regional Innovation Systems: the Role of the Governances in a Globalized World. UCL Press.
- Cooke, P. 2002. Knowledge Economies: Clusters, Learning and Cooperative Advantage. Routledge.